

## 제 4 장 대학원 학사운영

제17조 (논문연구계획서발표) 석·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전에 모든 학생들은 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발표하여야 한다.

제18조 (선수과목) 선수과목이 요구되는 과목은 교과목 개요에 명시하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졸업종합 시험) 석·박사과정의 전공종합시험 과목 및 절차는 대학원 규정에 따라 학부교수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 주임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논문제출 자격)

1. 석사과정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이전에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논문을 발표하여야 하며,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박사과정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이전에 전국규모 이상의 학술대회에서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SCI급 학술지 1편 포함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또는 게재확정)하여야 한다.
3. 위 1, 2호를 만족시키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도 교수가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 유무를 결정한다.

제21조 (지도교수 배정 및 지도학생 수)

1. 지도교수 배정은 지도교수의 희망 지도 인원을 입학 전형 이전에 조사 한 뒤 대학원 지원자 면접 심사 시 연구실 배정 희망원 (1~3순위)을 받고, 지도교수의 선발여부 검토를 거쳐 학과에서 최종 배정 결과를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발표한다.
2. 지도교수당 지도학생의 수는,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장학금 배정)

1. 장학생의 선정은 재학생 중에서 전일제 학생을 우선으로 하여 대학원 학과장이 배정한다.
2. 장학생 선정에는 신입생의 경우 면접점수와 이전대학 평균 성적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직전학기 성적과 연구 실적(전국규모 학술대회 논문발표와 전국 규모 학회지 논문 게재), 학생회 활동 및 기타 사항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항목	내용	반영사항	비고
직전학기 학점	9학점	평점의 100% 반영	
	9학점미만(3~6학점)	평점의 90% 반영	
연구실적	학술대회(국내)	15점	
	학술대회(국외)	20점	
	학술지(국내)	50점	
	학술지(국외)	100점	
	수상내역	5점	

▶ 학술대회 및 학술지는 제1저자 실적만 인정